

# 양 천 구

## 주 의 요 구

**제 목**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 1. 업무개요

■■■과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서울특별시의 활성화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시·도경찰청장과 지방국토 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찰서장과 지방 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매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2020. 2. 10. 수립한 ‘자전거도로 연차별 추진계획(2020~2024)’(▣▣▣▣과-8988호) 이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아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계획 수립 업무가 적정하게 이행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제4차 양천구 교통안전기본 계획’에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 방향’, ‘연도별 활성화 계획’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을 근거로 전체 교통수단의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전거 정책을 총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과는 법적 근거 및 목적이 명확히 구별되며, 교통안전기본계획 상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14개 항목을 모두 신고 있지 않고, 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사전에 서면으로 청취하여야 하는 절차와 서울특별시장에 제출하여야 하는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일부 자전거 인프라 확충 관련 내용이 교통안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법정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5. 조치할 사항

#### ▣▣▣▣과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적정하게 수립하고, 수립 시 관계기관 의견을 사전에 서면으로 청취하는 등 법정 절차를 이행하며, 수립한 계획을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